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. 8. 20 선고 2019가단250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0. 7. 16

판결 선고 2020. 8. 20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전북 고창군 D 대 325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, 10, 4, 16, 17, 1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샌드위치 판넬 주택 약 10㎡의 퇴거를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별지 도면 표시 9, 10, 4, 16, 17, 1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샌드위치 판넬 주택 약 10㎡를 철거하고,같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중 20%는 원고가,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D 대 325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지상 별지 도면 표시 9, 10, 4, 16, 17, 1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샌드위치판넬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 약 10㎡에서 퇴거하라.

이 유

1.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살피건대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, 건물 등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등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(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13916판결 등 참조),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북고창군 E 대 4043.1㎡ 지상의 F아파트 G호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퇴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배근